

## [별첨1] 공고문

(재)인천테크노파크 공고 제2022-229호

# 2022 인천 초기단계 콘텐츠 사업화 패키지 지원사업 모집공고(2차)

(재)인천테크노파크에서는 인천지역 문화콘텐츠 생산기업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분야의 제반 비용을 지원하고 성장지원을 통해 기업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,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2년 5월 2일

(재)인천테크노파크원장

### □ 사업목적

- 인천 초기 문화콘텐츠기업이 국내외 시장진출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비용 및 활동을 지원하여 콘텐츠의 경쟁력 강화 및 마케팅 능력 제고

### □ 사업개요

- 사업명 : 2022 인천 콘텐츠 사업화 지원사업
- 공고명 : 2022 인천 초기단계 콘텐츠 사업화 패키지 지원사업 모집공고(2차)  
※ 前 2022 인천 퍼스트 콘텐츠 사업화 패키지 지원사업
- 지원규모 : 8개사 내외 총 51백만원 지원  
※ 지원규모는 연간 총지원규모(15개사, 100백만원) 내에서 변동될 수 있음
- 지원대상 : 공고일 기준 창업일로부터 3년 이내 또는 매출액 1.5억 미만인 인천 소재(본사) 문화콘텐츠 기업

- 지원대상 : 아래 조건 중 1개라도 충족하는 인천 소재(본사 소재지 기준) 문화콘텐츠 기업
  - ① 공고일 기준 창업일(사업등록증 상 설립일자)로부터 3년 이내  
(단, 법인전환 기업의 경우 전환 이전 개인사업자의 설립일자를 창업일로 봄)
  - ② 매출액 1.5억원 미만 콘텐츠기업(2021년 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기준)
  - ③ 1차 선정기업(7개사) 신청가능(단, 수혜내용 동일시 중복지원 불가)
- 가점대상 : 공고일 기준 인천콘텐츠기업지원센터 입주기업(퇴거 예정기업 제외), ESG 실천기업
- 문화콘텐츠기업 :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(정의)에 해당하는 산업을 영위하면서 만화, 음악, 게임, 애니메이션, 캐릭터, 지식정보, 콘텐츠솔루션에 해당하는 콘텐츠를 자체 제작 및 개발하는 기업  
(\*단 출판, 영화, 광고, 단순 예술 공연 제외)

- 지원기간 : 협약일(2022. 6. 예정) ~ 2022. 10. (약 5개월)
- 지원내용 : 기업 성장을 위한 권리화, 마케팅 등(필요자금의 패키지 운영)

구분	NO	지원항목	세부 지원내용	지원금한도
STEP 1 권리화	1-A	지식재산권	-국내외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	3백만원
	1-B	인증	-인증마크 획득비용 지원(혁신형기업인증, 벤처인증, 기술인증 등)	3백만원
STEP 2 마케팅	2-A	디자인개발	-BI·CI 등 기업/콘텐츠 이미지 구축	6백만원
	2-B	홍보영상	-기업 및 콘텐츠 영상물 제작, 방송용 영상물 제작 및 송출	7백만원
	2-C	홈페이지/앱	-홈페이지 및 앱(UI/UX) 제작 및 리뉴얼	8백만원
	2-D	홍보판촉물	-카탈로그, 리플릿 등 인쇄물 제작	5백만원
	2-E	온오프라인 마케팅	-신문, 잡지, 라디오, TV, 유튜브 등 매체 이용광고 -키워드광고, 배너광고, 소셜마케팅, 중개플랫폼	10백만원

- 지원규모(5~10백만원) 내에서 필요한 지원항목 1~3개 항목 선택
- 지원금액은 추후 예산변경 및 선정평가에 따라 최대 지원한도가 변동될 수 있음
- 선정통보일 이전 지출한 비용은 소급하여 지원하지 않음
- 사업비는 내부 집행을 허용하지 않으며, 외부 수행사를 통한 집행만 인정함
- 각 지원항목의 수행사는 기업에서 자유롭게 선정(단, 해당 항목 관련 업종 업체에 한함)

## ○ 지원금액

- 8개사 내외 총 51백만원 지원(기업당 5~10백만원 차등지원)

지원금액	지원기업수	세부지원기준
최대 10백만원	1개 기업	지원항목 별 희망 지원금액 및 사업계획에 따라 심사위원회가 각 항목별 타당성 등급(A~C) 심사
최대 7백만원	3개 기업	- A등급 : 전액지원 - B등급 : 금액조정 - C등급 : 지원불가
최대 5백만원	4개 기업	

- 총 사업비는 공급가액으로만 산정하며, 사업추진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(VAT)는 기업이 별도 부담
- 사업규모 및 내용에 맞지 않은 과도한 예산 책정은 평가 시 감점요인이 될 수 있음
- 부가세는 지원금 집행 불가하며, 회계정산 결과 불인정 금액은 환수 조치함
- 사업비는 기업의 사업추진 내용과 적합하도록 신청하여야 하며, 평가위원의 판단에 따라  
신청금액의 적정성, 예산범위 등을 고려하여 최종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 확정

## □ 지원방법

### ○ 지원금 : 기업당 5~10백만원(차등지원)

- 총 사업비의 90%이내 지원(10%이상 기업 현금자부담)

구분	지원금	+	기업부담금	=	총 사업비
예시	총 사업비의 90% 이하	+	총 사업비의 10% 이상	=	100% (지원금+자부담)

## □ 지원조건

### ○ 의무이행활동

구분	세부내용	비고
교육수료	- e나라도움 보조사업자 과정 필수이수 ※ 명확한 보조금 집행·관리를 위해 참여인력 중 이체담당자를 포함 1인 이상 e나라도움 보조사업자 교육을 수료해야 함	1인 이상
	- 성희롱 예방교육 필수이수 ※ 성희롱 예방교육 인정범위 : 직장내 성희롱예방 법정의무교육, 민간보조사업자 성희롱 예방교육, 성평등 주제 관련 교육 등 ※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, 사업주 및 근로자 모두가 남성 또는 여성 중 어느 한 성(性)으로 구성된 사업에 대해서는 교육자료 또는 홍보물을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방법으로도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할 수 있음	참여인력 전원
프로그램 참여	- 콘텐츠기업 멤버십 프로그램 참여	1회 이상
성과관리	- 지원과제에 대한 요청자료 제출 필수 ※ 사업수행 관련 자료, 사후 결과조사(지원기업 모니터링 조사 및 지원 후 추진성과에 대한 조사), 정보공시 등	요청시

## □ 지원절차



※ 상기 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

## □ 선정방법 및 기준

- 선정방법 : 제출서류를 기준으로 적합성검토 및 서면평가 실시
- 선정절차 : 적합성검토(인천TP) → 서면평가(외부 전문가 5인) 순으로 진행
- 선정기준 : 선정평가점수 70점 이상인 기업에게 예산범위 내 차등지원
  - 최고최저점을 제외한 평균점수가 70점 이상인 기업에 한하여 ‘적격’으로 간주하며, 적격 해당 시 고득점 순으로 과제 선정
- ※ 최고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의 점수만 제외
- ※ 평균점수 산정 시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함
  - 동점지원과제 발생 시 우선순위 부여방법
    - ① 최고 · 최저점을 포함하여 평가점수 총점이 높은 과제
    - ② 고배점 평가항목(과제내용)의 총점이 높은 과제
  - 서면평가를 통해 지원대상 과제의 최종 지원여부 결정 및 기업이 제안한 사업비 규모에 대한 감액 조정을 진행함
- 평가위원 : 관련분야 외부 전문가 5명
  - 평가위원 예비명부(3배수) 추첨순위에 따라 섭외 및 구성
- 평가항목

평가항목		세부평가항목	배점
수행기관 (30)	경쟁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콘텐츠분야에 대한 인증·특허 등 기술력 및 전문성을 보유했는가?</li> <li>• 기업이 제시한 콘텐츠가 시장성이 있는가?</li> </ul>	15
	재무안정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추진계획이 지원금 규모에 적절하게 수립되어 있는가?</li> <li>• 자금집행의 투명성에 문제는 없는가?</li> </ul>	15
사업계획 (60)	적합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추진계획이 본 사업의 목적에 적합한가?</li> <li>• 추진계획이 기업 주력콘텐츠분야 성장에 적합한가?</li> </ul>	30
	실현가능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추진계획이 구체적이고 명확한가?</li> <li>• 사업기한 내에 사업 완수가 가능한가?</li> </ul>	30
기대효과 (10)	발전가능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기업이 지원사업을 통한 콘텐츠의 확산이 가능한가?</li> </ul>	10
가점사항 (5)	입주기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인천콘텐츠기업지원센터 입주기업인가?</li> </ul>	2
	ESG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전년도 기부실적(사회적 가치실현)이 있는가?</li> </ul>	1
	기업특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유망 중소기업, 여성기업, 장애인기업, 벤처기업</li> </ul> <p>※ 4개 기업특성 중 1개라도 해당시 2점부여</p> <p>※ 중복해당시 최대배점인 2점부여</p>	2
합계			100(105)

○ 지원금 산정기준

구 분	A 등급	B-1 등급	B-2 등급	C 등급	비 고
평가 점수	90점 이상	90점 미만 ~ 80점 이상	80점 미만 ~ 70점 이상	70점 미만	
지원금 인정율	100%	70%	50%	지원불가	신청금액 기준

○ 선정통보 : 인천TP 홈페이지 게재 및 선정기업에 개별통보

□ 지원사업 배제사항 및 지원제외 사항

구 분	내 용
배제사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• 공고일 기준 본사가 인천광역시 내 소재가 아닌 기업</li><li>• 당해연도 동일사업 분야(사업화 지원사업*)내 중복지원 불가</li></ul> <p>* 사업화 지원사업 : 2022 인천 초기단계 콘텐츠 사업화 패키지 지원사업, 2022 인천 성장 단계 콘텐츠 사업화 패키지 지원사업</p>
지원제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• 공고일 기준 국가연구개발(또는 지원)사업에 참여제한 조치 중인 기업(대표) 및 사업 책임자</li><li>• 공고일 기준 사업자(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), 과제참여인력, 대표권자, 업무집행권자 및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자가 「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경우</li><li>• 공고일 기준 체납(국세 및 지방세 체납, 수행사업의 정산잔액 미납, 기술료 미납 등) 중인 기업</li><li>• 타인의 작품을 모방하거나 타인의 저작권을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</li></ul> <p>※ 위 사항에 1가지 이상이라도 해당될 시 지원 불가함</p> <p>※ 만약 허위사실로 사업 신청할 시, 선정여부와 관계없이 선정취소 및 지원금 전액 환수 조치, 향후 사업 관련 제재 조치함</p>

□ 접수방법 및 문의처

○ 접수기간 : 공고일 ~ 2022. 5. 27.(금) 17:00까지

※ 접수시간 이후 접수가 불가능하오니, 접수 마감시간을 염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○ 접수방법 : 비즈오케이(Biz-OK)를 통한 온라인 접수

※ <http://bizok.incheon.go.kr> 홈페이지 내 '온라인 기업지원사업신청'에서 신청

※ hwp형식의 문서만 가능하며, pdf, pptx 등 타 형식의 문서는 접수 불가

○ 제출서류 ※ 서류 발급일자 및 유효기간 확인 필수

구분	세부구분	서류 및 요건
필수	신청서 (붙임문서)	신청서(서식1), 추진계획서(서식2), 동의서(서식3), 체크리스트(서식4), 성폭력 관련 사실 확인서(서식 5)
	사업자등록증	사업자등록증 / 법인등기부등록증(법인사업자만 해당) <b>*공고일 이후 발급분</b>
	재무제표	2021년 결산년도 재무제표 (국세청 표준재무제표증명 또는 세무사발행 재무제표확인원) *설립 1년미만 기업, 개인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제출가능
	국세/지방세 완납증명서	국세/지방세 완납증명서 <b>*증명서 유효기간 확인필수(공고일기준)</b>
	4대보험 완납증명서	사업장 4대 사회보험 완납증명서(건강, 연금, 고용, 산재) <b>*공고일 이후 발급분</b>
선택	유망중소기업	인천시지정 유망중소기업 선정서
	여성기업	여성기업인확인서(한국여성경제인협회 인천지회 발급)
	장애인기업	장애인기업확인서(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 발급)
	벤처기업	벤처기업확인서
	입주기업	사업자등록증으로 갈음
	ESG 실천기업	전년도 기업명의 기부증서
	법인전환기업	법인전환 전 개인사업자 등록증(창업일자 확인용도)

※ 개별파일은 하나의 압축파일로 업로드 하되, 압축시 파일명은 아래와 같이 작성

※ 파일명(예시) : 2022 초기단계콘텐츠사업화지원\_기업명

○ 문의처

구분	담당	연락처
사업문의	(재)인천테크노파크 문화산업지원센터 사업담당	(유선) 032-876-5072 (메일) renelly@itp.or.kr

※ 문의시간 : 평일 09:00 ~ 18:00(점심시간 12:00 ~ 13:00 및 공휴일 제외)

## □ 기타 유의사항

### ○ 일반사항

- 본 사업은 「문화산업진흥기본법」,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, 「국고 보조금 통합관리지침」 등에 의거하여 수행되며, 선정기업은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해야 함
- 본 사업의 신청, 사업 수행에 있어 관계법령, 안내지침 등의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기업의 책임임
- 상기 공고 내용은 내부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음

### ○ 사업신청

- 사업신청 시 인감이 필요한 서류는 반드시 인감 날인 후 제출하며, 사본은 원본대조필하여 제출
- 사업 공고문에서 제시한 접수기한을 지키지 못했을 시, 어떠한 사유에 의해서도 접수 불가함에 따라 사업담당자에게 접수 청탁연락 금지
- 제출 서류 중 인감을 날인해야 하는 항목에 날인이 없는 경우 해당 내용은 제안으로 인정하지 않음
- 제출된 신청서는 신청기업의 요청에 의해 임의로 추가 또는 보완될 수 없으며,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
- 당해 연도 동일사업 분야 중복지원 불가(인천 초기단계 콘텐츠 사업화 패키지 지원사업 또는 인천 성장단계 콘텐츠 사업화 패키지 지원사업 중 택1)

### ○ 사업의 선정 및 취소

- 공정한 기준을 통해 평가를 이행하여 수행기관을 선정함에 따라, 주관적 인 판단으로 평가위원의 전문성 및 공정성을 의심하는 항의행위 금지
- 지원사업 신청서류 간소화에 따라 협약 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함
- 지원 대상으로 확정통보 받은 이후 전담기관(ITP)에서 요청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, 기한 내 서류 미제출, 협약일 기준 서류 부적합 등으로 참가기준 부적격 사실이 확인된 경우 협약대상에서 제외(선정 취소)될 수 있음
- 선정기업의 사유로 사업 포기, 타 기관 등으로부터 동일한 내용에 대한 지원금 중복수혜 등 지원 취소사유 발생 시에는 사업선정일로부터 1개 월 이내에 지원포기 공문을 제출하여야 함
- 본 사업 선정 및 협약체결 이후 수행기관의 서류 허위제출 등의 사항에 따른 제재사유 발생 시 전담기관(ITP)은 사업즉시 중단, 지원금 환수, 사

업 참여제한, 유관기관에게 제재사항 안내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

- 동일한 내용으로 전담기관(ITP)이나 타 지원기관(정부 및 공공기관)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선정 이후에도 선정취소, 지원금 환수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

## ○ 사업추진

- 본 사업은 ‘본사가 인천 소재인 콘텐츠기업’ 대상 사업이므로 사업 선정 후 지원기간 중 본사를 인천 외 지역으로 이전할 경우 전액 환수 조치함
- 사업추진 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는 선정기업이 부담함
- 과제수행기관은 사업예산(지원금 및 기업부담금)을 별도의 계정(계좌)으로 구분·관리하여야 하며, 지원사업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
- 지원금 사용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기업별 정산보고서 제출 후 회계법인을 통해 회계검증을 실시해야 하며, 회계검증 및 최종 정산결과에 따라 불인정금액 및 집행 잔액을 반납하여야 함
- 선정기업은 명확한 보조금 집행·관리를 위하여 중간점검 실시 전까지 e나라도움 보조사업자 과정 수료증을 제출하여야 함

\* 수료일자의 경우 선정통보일 ~ 중간점검일 내여야 함

- 선정기업은 문체부 문화예술계 성희롱·성폭력 근절 대책(2018.03.)에 따라 성희롱 예방교육 이수 확인서를 중간점검 전까지 필수로 제출하여야 함
- \* 남녀고용평등법 및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39조에 근거, 사업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의무 부과 및 미실시 시 과태료가 부과됨
- \* 문체부 문화예술계 성희롱·성폭력 근절 대책(2018.03.) : 공모사업 등 지원 시 성희롱 예방 교육 이수 확인서 및 성범죄 예방 노력을 담은 서약서 제출 의무화
- 선정된 모든 과제는 결과평가 이전까지 과제의 개발을 완료하고 최종결과물을 제출해야 하며, 모든 선정과제는 협약기간 종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실적보고 및 정산을 완료해야 함
- 본 사업 협약체결 이후에 타당한 사유 없이 협약해지 또는 사업기간 내 과제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 지원금 전액환수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

## ○ 성과관리

- 본 사업의 결과물은 전담기관(ITP) 또는 관련기관에서 지원성과물로 활용·전시될 수 있음
- 선정기업은 향후 3년 간 사후 결과조사(지원사업 모니터링 조사 및 지원 후 추진성과에 대한 조사 등)에 성실히 임해야 함